



## 정책/제도

### AI에 의해 생성된 자료의 저작물성과 권리의 주체

#### ■ 개요

- (생성형 AI 기술 전망)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2023년 6월 발행한 ‘생성형 AI의 경제적 잠재성’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연간 약 3385조 원(2조 6000억 달러)에서 약 5731조 원(4조 4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2030~2060년 사이 인간 업무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sup>1)</sup>
- (생성형 AI 기술의 양면) 생성형 AI 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그림자가 공존함
-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쟁점) 생성형 AI를 사용한 작품을 인간이 저작한 저작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호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AI를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됨
- (AI 출력의 저작물성 관련 사례) 2022년 콜로라도 주 박람회의 연례 미술대회에서 AI 프로그램 Midjourney를 통해 만든 “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디지털 예술 부문에서 1위 수상하면서,<sup>2)</sup> 동료 예술가들의 많은 비난을 받음

1) Michael Chui et al.,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Jun 14, 2023, McKinsey & Company,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mckinsey-digital/our-insights/the-economic-potential-of-generative-ai-the-next-productivity-frontier#/>](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mckinsey-digital/our-insights/the-economic-potential-of-generative-ai-the-next-productivity-fron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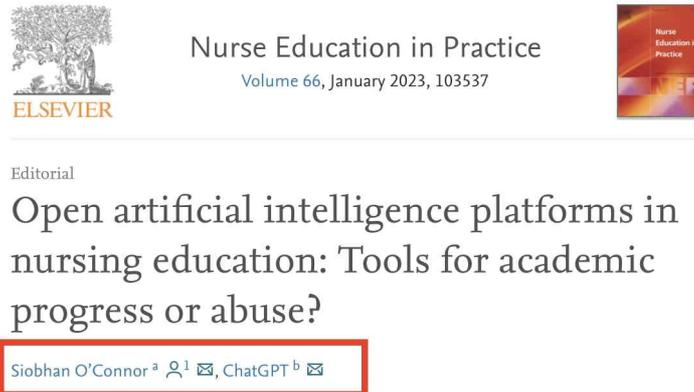
2) 김재윤, ‘AI가 그린 그림, 예술일까?’, CHANNEL PNU, 2022.11.02.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0>>

[그림] Jason M. Allen의 AI 생성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



- (AI 저작자 관련 사례) 최근 일부 논문에서는 저자와 Chat GPT 또는 OpenAI를 공동저작자로 표기. 그러나 저작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계는 저작자라 볼 수 없음
- \* 특히 우리 저작권법 제137조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러한 표기는 적절하지 않음

[그림] ChatGPT와 공동저자 표시



\* source :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모델의 법률문제”, 98면

■ 주요 내용

1.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미국의 정책

가. 저작권청의 결정

- **(생성형 AI 사용 출력물의 저작물성 인정)** 2023년 2월 21일, 미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은 인간이 생성한 텍스트와 선택, 조정, 배열 등을 포함하여 인간(텍스트)과 AI(즉, 이미지)가 함께 생성한 저작물 등록 결정<sup>3)</sup>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성명서 발표)** 2023년 3월 16일, USCO는 AI로 생성된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인간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다”는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서,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저작물성 인정. 단, 인간이 텍스트 일부를 작성하거나 선택 또는 배열하는 형태로 최종 제품에 작업을 기여한 경우 해당함을 밝힘<sup>4)</sup>

## 나. 정책 성명서의 주요 내용

- **(제안배경)**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제기되는 문제들, 즉 AI가 생성한 자료의 저작권 보호여부, 인간 저작과 AI 생성 부분이 공존하는 작품의 등록 가능여부, 등록 시에 AI 사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신청자가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등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
- **(인간 저작 요건)** “저작자”의 개념에 AI는 포함될 수 없으며, 인간 창의성(creativity)의 산물인 자료(material)만이 보호 가능
  - 미연방대법원은 저작자를 “무엇이든 그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 창작자; 만든 사람(maker); 과학이나 문학 작품을 완성한 사람이라 정의하면서, 인간의 한 부류로서 저작자를 설명하였으며, 저작권을 “자신의 천재성이나 지성을 생산한 것에 대한 인간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표현한 바 있음.<sup>5)</sup> 연방항소법원 역시 유사한 견해를 지지.
  - 1973년 저작권청의 실무개요(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ctices)에서도 인간에게서 기원하지 않은 자료는 등록될 수 없음을 경고,<sup>6)</sup> 이 개요서의 두 번째 개정판에서는 “authorship”의 용어 정의에서 작품이 저작권을 갖기 위해 그 작품이 인간에게서 기원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sup>7)</sup>

3) 남혁우, ‘美 저작권청, 사람의 창의성 입증된 AI작품 저작권 인정’, ZDNET Korea, 2023.3.19., <<https://zdnet.co.kr/view/?no=20230319092526>>, 등록결정 원문은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4) Maria Korolov, ‘AI work can be copyrighted, if human creativity was involved’, METASTELLAR, Mar 16, 2023, <<https://www.metastellar.com/nonfiction/news/ai-work-can-be-copyrighted-if-human-creativity-was-involved/>>, 결정문은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3-05321.pdf>>

5) 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v. Sarony, 111 U.S. 53, 57-58 (1884).

6)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sec. 2.8.3(I)(a)(1)(b) (1st ed. 1973).

7)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sec. 202.02(b) (2d ed. 1984).

- 2021년 발행된 최신 실무개요서에서는 저작물의 “authorship” 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을 인간이 창조하였어야 하며, 인간 작가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작위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단순한 기계적 프로세스 또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등록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sup>8)</sup>
- **(인간 저작 요건의 적용)** AI 생성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경우, AI 기여도가 “기계적 복제”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자가 가시적 형태를 제공한 저작자의 독창적인 정신적 개념(mental conception)”의 결과인지를 판단하며, 특히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최종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짐
  - 작품에서 저작(authorship)의 전통적인 요소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인간 저작요건의 부족으로 등록거절 됨. 예컨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인간이 AI 생성 자료를 충분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택 및 재배열하여,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원본 저작물(original work of authorship)을 구성하거나, AI 기술로 생성한 자료를 인간이 저작권보호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수정한다면, 당해 작품의 인간 저작 측면(human-authored aspects)을 보호함. 인간은 자신이 쓰거나 정리한 텍스트 부분의 저자로 간주됨
- **(저작권 등록신청 시 AI 사용 사실 고지의무)** 신청자는 등록을 위해 제출된 작품에 있어 AI 생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신청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신청자는 저작물에 AI 생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 제공)
  - 신청자는 단지 작품을 만들 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를 제공한 회사를 저자나 공동저자로 기재해서는 안됨
  - 현재 청에 계류 중인 신청건의 경우, 신청자는 저작권청 정보 사무소(Copyright Office’s Public Information Office)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청서에 해당 저작물에 AI 생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락 되었음을 보고해야 함
  - 이미 처리되어 등록된 건의 경우, 신청자는 보충 등록(supplementary registration)을 제출하여 공개 기록을 수정해야함. 보충 등록 시 신청자는 “저작자 작성(Author Created)”란에 인간 저작자가 기여한 원본 자료를 기술하고, “제외된 자료/기타(Material Excl

8)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sec. 313.2 (3d ed. 2021)

uded / Other)”란에 AI 생성 자료를 기재해야 하며, “새 재료 추가/기타(New Material Added / Other)”란을 작성. 승인 시 AI 생성 자료를 다루는 면책조항과 함께 새로운 보충 등록 인증서가 발급됨

- (등록 취소 사유) AI로 생성된 자료에 대한 등록을 획득한 후 공공 기록(public record)을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등록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의심스러울 때 저작권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신청인이 고의로 관청에 부정확한 정보를 청에 제공하였고, 교정된 정확한 정보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결론이 난 경우, 법원은 저작권법 §411(b)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당해 등록을 무시할 수 있음

## 2. 영국의 입법례

- 영국 저작권법 제9조(3)은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고 규정. 추가적으로 제178조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기인된’이란 그 저작물의 인간저작자가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저작물이 산출된 것을 말한다”고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

## 3. 국내 논의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2020년 인공지능 저작물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6785), 주호영의원 등 11인, 2020.12.21.)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 마련을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이 운영되었으며 (‘23.2~10), 저작권위원회는 그 결과를 2024년 1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로 발간하였음<sup>9)</sup>

-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
-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2023년 워킹그룹에서는 (i)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ii)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iii)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그 밖에 (iv)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을 논의<sup>10)</sup>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최근 발간된 이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체크하고, AI 사업자와 저작권자 AI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안내. 그 밖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Q&A, 국내외 입법 동향 등을 수록
- 다만, 저작권위원회는 본 안내서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힘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호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4-02호)’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

## ■ 시사점

- 인공지능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에 노력이 필요

9) 이현경, ‘문체부, AI-저작권 선제 대응...’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NEWSIS, 2023.12.2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7\\_0002572112&cID=10701&pID=107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7_0002572112&cID=10701&pID=10700)>

10) 문체부 보도자료,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2023.2.24.

## 참고자료

- Maria Korolov, ‘AI work can be copyrighted, if human creativity was involved’, METASTELLAR, Mar 16, 2023.
- Michael Chui et al.,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McKinsey & Company, Jun 14, 2023.
-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모델의 법률문제”, 정보법학 제27권 제1호, 2023.
- 김재윤, ‘AI가 그린 그림, 예술일까?’, CHANNEL PNU, 2022.11.02.
- 남혁우, ‘美 저작권청, 사람의 창의성 입증된 AI작품 저작권 인정’, ZDNET Korea, 2023.3.19.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2023.2.24.
- 이현경, ‘문체부, AI-저작권 선제 대응…’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NEWSIS, 2023.12.27.

SPC 'ANGEL'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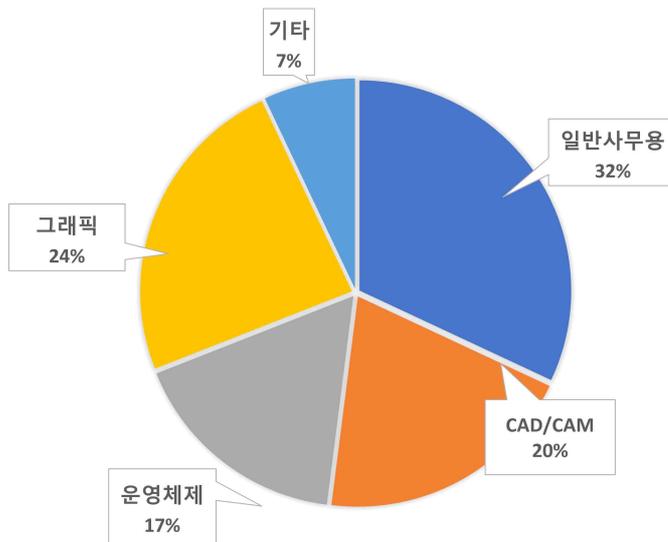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12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12월 한 달간( '23. 12. 1. ~ 12.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87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28건(32%), 그래픽 21건(24%), 설계(CAD/CAM) 17건(20%), 운영체제 15건(17%), 기타 6건(7%)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023년 12월 통계 현황

2023.1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SW 용도별 제보 건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3호> 발간일은 2월 10일입니다.